

의안번호	2216996
의 퇴 인	정춘생의원
회 답 일	2026.4.24.
추계번호	26D1030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6억 8,400만원, 2027년 68억 4,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 135억 2,400만원(연평균 67억 6,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27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합계	평균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제9조)	6,684	6,840	13,524	6,762

주: 본 추계는 현행 조사위원회의 인력 및 사업 규모가 동일한 상황에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1년 연장되는 것을 전제로 추계한 결과이며,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피해자의 범위에 10·29이태원 참사 당시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함 ※ 현행법은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을 제외하도록 함	의무규정
2	안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	의무규정
3	안 제56조의2(보상금)	국가는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상금의 지급 대상,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재량규정
4	안 제61조의2(교육비 지원)	국가등은 피해자가 유아, 학생 등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 61조의3(일상생활돌봄 지원)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식사 지원 서비스 및 그 밖에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등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조(정의)	×	개정안에 의해 피해자의 범위에 10·29이태원 참사 당시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을 포함 ¹⁾ 시키는 경우 현행법 제57조에 따른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제58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의 지원, 제59조에 따른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제63조에 따른 법률지원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 현황자료가 없으며 ²⁾ ,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추정하기 곤란함
2	안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	
3	안 제56조의2(보상금)	×	피해자의 범위에 공무원을 포함시키는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개정안은 보상금 지급 대상,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급될 보상금의 규모 예측하기 곤란함
4	안 제61조의2(교육비 지원)	×	개정안은 입학금·수업료 등의 지원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움
5	안 제 61조의3(일상생활돌봄 지원)	×	개정안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건강과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식사 지원 서비스” 등의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이와 관련된 지원 규모를 예측하기 곤란함

1)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생 략)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2조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1)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2)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직무로서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공무원은 현행법 상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 현황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소방청 보고내용 중)에 이태원참사 당시 동원인력이 3,212명(소방, 경찰, 일반공무원 등)으로 기록되어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현행법에 따른 조사위원회 활동기한은 2026년 6월 16일까지이고, 개정안에 따라 연장되는 활동기한은 최대 2027년 6월 16일까지임

○ 조사위원회는 2025년 6월 17일 첫 조사개시 결정

• 현행법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제27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제46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현행) 2025.6.17.~2026.6.16.(1년) → (개정안) 2025.6.17.~2027.6.16.(2년)

－ 비용추계 대상 기간

：2026.6.17.~2027.6.16.(1년)

○ 현행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조 제2항에 따른 활동기간 연장은 고려하지 않음

－ 현행법 제9조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조사위원회는 활동기간을 2026년 9월 16일로 연장한 바 있음

－ 그럼에도 개정안에 따른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법 조문에 근거하여 최초 조사개시일인 2025년 6월 17일부터 2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2027년 6월 16일 활동이 완료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은 위원회 운영비, 인건비, 기본경비로 구분하여 추계하며,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액을 준용함

-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공무원임금평균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³⁾를 적용함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개정안에 따라 2026년 6월 17일부터 2027년 6월 16일까지 위원회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위원회 운영비) 개정안에 따라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위원회 운영비는 2026년 14억 8,800만원, 2027년 15억 1,800만원 등 2년간 총 30억 600만원으로 추계됨
 - 2026년도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회 운영비 예산은 2,860백만원으로, 정부는 조사활동 9개월, 종합보고서 작성 3개월을 전제로 해당 예산을 편성하였음
 - 종합보고서 작성 예산을 제외한 위원회 운영 9개월분의 예산은 2,232백만원이며, **1개월당 위원회 운영비 금액은 248백만원임**
 - 추계의 전제에 따라, 위원회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26년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의, 2027년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2027년도 1개월당 운영비는 2026년도 1개월당 운영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표 2]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위원회 운영비 추가재정소요: 2026~2027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합계
1개월당 위원회 운영비	248	253	-
연장 개월 수	6	6	-
위원회 운영비	1,488	1,518	3,00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전망(2026.3.30.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2.0	2.0	2.0	2.0	2.0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3.0	3.0	3.0	3.0	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인건비)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3억 5,200만원, 2027년 24억 2,400만원 등 2년간 총 47억 7,600만원으로 추계됨

- 2026년도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인건비 예산은 4,707백만원임
 - － 위 금액은 조사활동 9개월 및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3개월 연장이 반영된 12개월분의 인건비 금액임
 - － 2026년의 1개월당 인건비는 392백만원임
- 추계의 전제에 따라, 위원회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26년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의, 2027년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의 인건비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 2027년도 1개월당 인건비는 2026년도 1개월당 인건비에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을 적용

[표 2]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추가재정소요: 2026~2027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합계
1개월당 인건비	392	404	－
연장 개월 수	6	6	－
인건비	2,352	2,424	4,77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본경비)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기본경비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8억 4,400만원, 2027년 28억 9,800만원 등 2년간 총 57억 4,200만원으로 추계됨

- 2026년도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기본경비 예산은 5,684백만원임
 - － 위 금액은 조사활동 9개월 및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3개월 연장이 반영된 12개월분의 기본경비 금액임
 - － 2026년의 1개월당 기본경비는 474백만원임
- 추계의 전제에 따라, 위원회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26년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의, 2027년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의 기본경비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 2027년도 1개월당 기본경비는 2026년도 1개월당 기본경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표 2]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기본경비 추가재정소요: 2026~2027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합계
1개월당 기본경비	474	483	—
연장 개월 수	6	6	—
기본경비	2,844	2,898	5,74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6억 8,400만원, 2027년 68억 4,000만원 등 2년간 총 135억 2,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27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합계
위원회 운영비	1,488	1,518	3,006
인건비	2,352	2,424	4,776
기본경비	2,844	2,898	5,742
합계	6,684	6,840	13,52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현행 조사위원회의 인력 및 사업 규모가 동일한 상황에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1년 연장되는 것을 전제로 추계한 결과이며,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